

제296회 정례회  
2010. 12. 14(화)

# 심사보고서

- 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건설소방위원회

# 심사보고서

○ 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

## 「충청북도 저수지·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」

# 심사 보고서

2010. 12. 14(화)

건설소방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: 2010년 10월 5일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7일

(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균형건설국장 송영화)

가. 제안이유

- 도내 위험저수지·댐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, 기술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전문가의 심의·의결을 통해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함

## 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저수지 · 댐안전관리위원회 목적(안 제1조)
- 충청북도 저수지 · 댐안전관리위원회 기능(안 제2조)
- 충청북도 저수지 · 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길 기 웅)

- 충청북도 저수지 · 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을 검토한바
- 도내 위험저수지 · 댐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, 기술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전문가의 심의 · 의결을 통해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- 「저수지 ·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규정을 근거로 충청북도 저수지 · 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조례안 제1조 충청북도 저수지 · 댐안전관리위원회를 “위원회”로 약칭하는 내용과 제3조제3항제4호 등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 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## 7. 수 정 안 요 지

- 수정이유 : “위원회” 약칭을 추가하고,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.
- 주요 수정내용
  - 안 제1조 중 “충청북도 저수지 · 댐안전관리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저수지 · 댐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”로 한다.
  - 안 제4조 중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”를 “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”로 한다.

## 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## 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저수지 · 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

## 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1조 중 “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- 안 제3조제3항 “제4호”를 “제3호”로 한다
- 안 제4조 중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”를 “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”로 한다

##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수지 ·댐의 안전 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 5조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<u>충청북도 저수지 ·댐안전 관리위원회</u>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수지 ·댐의 안전 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제 5조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<u>충청북도 저수지 ·댐안전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3조(구성)  <u>①~③(생략)</u>  <u>1.~2.(생략)</u>  <u>4.(생략)</u></p>	<p>제3조(구성)  <u>①~③(원안과 같음)</u>  <u>1.~2.(원안과 같음)</u>  <u>3.(원안과 같음)</u></p>
<p>제4조(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<u>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4조(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<u>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</u></p>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 저수지 · 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수지 ·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충청북도 저수지 · 댐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「저수지 ·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위험저수지 · 댐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험저수지 · 댐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
3. 저수지 · 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
4. 저수지 · 댐의 유지 · 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의 저수지 · 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재난 · 방재 분야 및 저수지 · 댐 업무관련 과장급 공무원
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 댐공학 · 하천공학 · 환경공학 · 수문학 ·

수리학 · 토질공학 또는 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
3.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 · 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
제4조(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 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·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회의 개최시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명과 간사 · 서기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.  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8조(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)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
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, 의견의 진술과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관련법령 발췌

#### □ 저수지 ·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
제5조(시 · 도저수지 · 댐안전관리위원회) ① 시 · 도본부장 소속으로 시 · 도 저수지 · 댐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 · 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 
 ② 시 · 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 
 ③ 시 · 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조 (위험저수지 · 댐 정비지구의 지정) ①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· 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 · 댐 정비기본계획(이하 "정비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 · 댐 정비지구(이하 "정비지구"라 한다)로 지정 ·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은 광역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 · 도지사"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저수지 · 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 · 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2. 저수지 · 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

2. 정비지구의 범위
3. 저수지·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
4. 위험저수지·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
5.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
6. 위험저수지·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·관리계획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③ 위탁시행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④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위원회 또는 시·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.
- 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⑥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사업
2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
3.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
4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사업
5. 「낚시어선업법」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
6. 「주택법」 제2조에 따른 주택단지조성사업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13조 (위험저수지·댐 정비사업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로 지정·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·댐의 정비촉진을 위하여 위험저수지·댐 정비사업(이하 "정비사업"이라 한다)을 직접시행하거나,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시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·댐 정비사업시행자(이하 "정비사업시행자"라 한다)를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해당 위탁시행자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시행계획(이하 "사업시행 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경유하여 시·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시·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여야 한다.

## □ 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[시행령]

- 제13조 (시·도지사의 정비기본계획 승인)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정비지구"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위험저수지·댐 정비지구(이하 "정비지구"라 한다)의 지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지구를 말한다.
-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정비기본계획의 보완 요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- ③ 시·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승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